제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생명의료 윤리

1. 생명의료윤리의 4대 원칙

2. 안락사

'안락사'라는 말은 euthanasia로서 'eu'는 좋다(good)는 뜻을 의미하고 'thanatos'는 죽음을 의미한다. 즉 안락사란 좋은 죽음, 안락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오늘에 와서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안락사(mercy killing)는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락살해(安樂殺害)의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안락사란 용어는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했으나 자살방조(assisted suicide)라는 뜻이 담겨있고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처음 번역한 것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50년 전만해도 우리말 사전에는 이 용어자체가 없었으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용어이다.

안락사의 분류는 관점에 따라 능동적, 수동적, 자발적, 비자발적, 간접적, 직접적인 안락사 등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는 안락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바람과 관계없이 환자의 사망과정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인데,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를 말한다. 이때 의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치하는 도중 예상된 부작용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간접적 안락사라 한다.

둘째,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게 필요 없는 치료의 연장을 보류하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므로 환자가 죽게 버려두는 죽음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하는 대상은 소극적 안락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진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입법화가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민적 합일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이든 소극적 안락사이든 간에 안락사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한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현장에서 보는 진정한 소극적 안락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안락사에서 풍기는 '인위적 사망'의 어감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 등장한 것이 '존엄사'이다. 존엄사란 용어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낸 용어이며 영어로 번역할 적당한 단일용어가 없으므로 영어권에서는 death with dignity(존엄사)라 부른다.

http://www.hospic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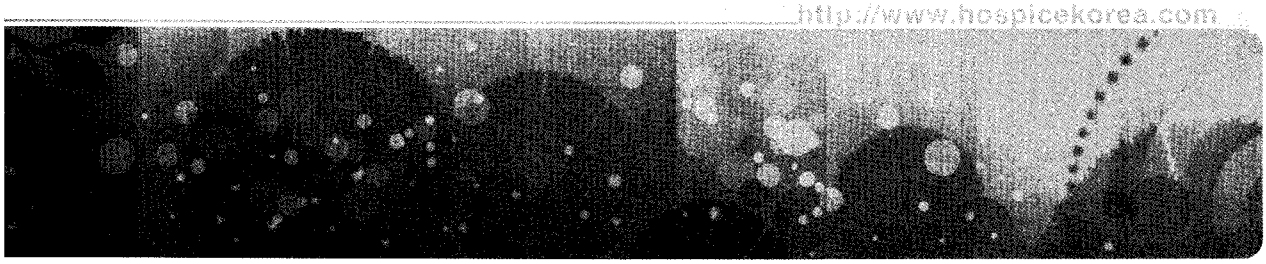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권에서는 '존엄사'란 용어가 간접적 안락사란 용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 의료행위는 대동소이하다. 일부에서는 존엄사도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진정한 존엄사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윤리적 측면이나 실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의학도는 환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만 배웠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종 앞에선 의료인마저도 항상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호스피스에서는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필자는 한 세미나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두 용어가 모두 적합하지 않다면 '호스피스 사(死)'라 하자고 제언한 바 있다. 호스피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소극적 안락사이든 존엄사이든, 자연사이든 용어해석에 큰 논쟁이 없었다.

호스피스에서는 죽음에 관한 용어가 아니라 의미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사역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세속적 차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죽음이란 삶의 완성이며, 운명의 확정이며, 삶의 옮김이며,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며, 호스피스는 이것을 돕는 일이므로 '호스피스사'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3.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죽음을 소극적 안락사, 자연사 또는 더 완화된 말로 표현하여 '존엄사'라 부른다. 연명의료(unwanted life prolonging medical treatment)란 생명의 소생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에게 원하지 않은 생명을 근대 의학적 기술로 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극심한 아픔으로 고생하는 말기환자들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식물상태의 환자들, 그리고 치료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환자들에게 목숨만 연명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이며 요즘 와서는 '존엄사'라고 흔히 말한다. 존엄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맞이하는 죽음'이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의료연명 거부권 또는 생명유지 치료거부권을 말한다.

존엄사의 대상은 고통 받고 있는 환자 중 현대의학지식과 최신의료기술로서는 치유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이 확실하다고 판정된 자, 즉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환자(non-curable and terminal patient)이다. 실제로 이러한 임종환자(dying patient)에게 최첨단 기술의 연명의료를 베푸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를 끼칠

제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생명의료 윤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연명의료의 중단인 '의료연명 거부권' 또는 '생명유지치료 거부권'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전유언(Living Will) 또는 사전의사결정서(Advance Directive) 등의 서류형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생전에 미리 결정하여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변호사나 친지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21일에 처음으로 첫 존엄사의 허락을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존엄사의 인정은 시대에 맞게 잘된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의 악용과 난발을 막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존엄사에 대한 철저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져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존엄사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가져온다. 존엄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한다.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존엄사 선언서의 한 사례를 여기에 소개한다.

〈존엄사 선언서〉

나는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나,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을 남깁니다.

이 선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하든지, 또는 철회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밝힙니다.

-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에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거절합니다.
-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실시하십시오. 그 때문에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내가 수개월에 걸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일체의 생명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 나의 존엄사 선언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희망에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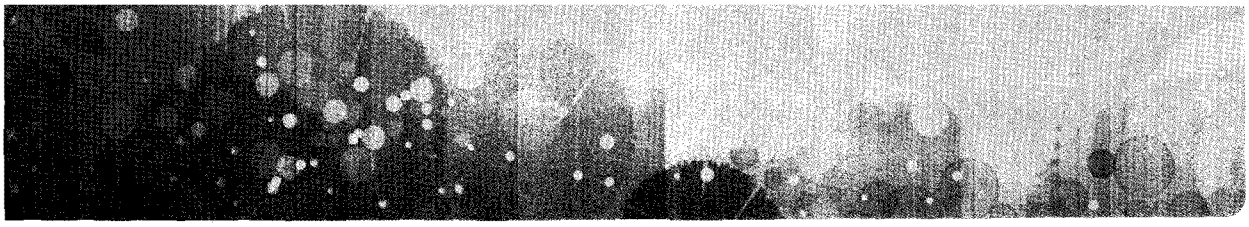

4. 호스피스환자의 권리

호스피스 환자란 예견된 죽음의 과정이 6개월 미만인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는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돌보며 섬기는 생명사랑의 프로그램이다. 호스피스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음 인용문은 임종환자의 권리장전(The Dying person's Bill of Right)의 한 사례이다.

-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 나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희망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나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자에 의해 간호 받을 권리가 있다.
- 나는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내 방식대로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 나는 나의 간호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나는 치료(cure)목적이 안위의 목적으로 변화할지라도 계속적인 의료와 간호의 관심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 나는 홀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나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 나는 나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 나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나는 나의 죽음을 수용하는데 있어 나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권리가 있다.
- 나는 다른 이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결정에 대해 판단 받지 않고 나의 개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나의 신앙과 영적 경험을 충족시키고 토의할 권리가 있다.
- 나는 인간 육체의 성스러움이 죽은 후에도 존중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 있는 사람에게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원고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 개정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